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2,677,741	10,280,332
일반회계	306,293,693	9,188,811
특별회계	36,384,048	1,091,521
기타특별회계	36,384,048	1,091,521
상수도사업	2,207,044	66,211
하수도사업	1,402,917	42,088
수질개선	5,189,420	155,68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56,697	13,701
의료급여기금	527,397	15,822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15,500	15,465
기반시설	397,875	11,936
소득특화사업	6,369,788	191,094
농공단지조성사업	2,597,535	77,926
공영개발사업	6,136,658	184,100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583,217	317,49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37,654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

제 4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9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